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93. 8. 17 총리령 제430호
1995. 2. 6 환경부령 제4호
1999. 2. 19 환경부령 제68호

환경부가 지난 2월 발표하고, 이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내용을 게재합니다.

— 편집자주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가 따라야 할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이라 함은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용기에 담거나 적합한 재료로 씌운 상태를 말한다.
2.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중합제품"이라 함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4. "감량화"라 함은 포장재를 감량하거나 포

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매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품의 포장방법)

① 제조자 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포장공간비율·포장회수 등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포장재의 재질기준)

① 제조자등은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01.



1. 1시행).

③ 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모든 종합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제5조의2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① (별표 1)에 규정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별표 2)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 등은 포장재의 생산자 등과 함께 단체(이하 "재활용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감량화할 수 있으며,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자 등은 해당 제품에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수 있다.

③ 제조자등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 가. 대표자 성명

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다. 소요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

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대상제품 제조자 등의 60퍼센트이상 또는 대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총량의 6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자 등의 참여약정서

④ 재활용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목표율을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의 이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01. 1. 1시행).

제5조의3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에 관한 검사 등)

① 법 제15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기술표준원

나.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다. 환경부장관이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9. 8. 9시행).

제5조의4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표시방법)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99. 8. 9시행).

제6조(제품포장방법 등의 예외)

제조사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2.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3.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 또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감시성적서 및 의견서(99. 8. 9시행)

제7조 (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다음 각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 중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호의 비율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린스류 : 100분의 20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 100분의 20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1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 100분의 10

② 유동산업발전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 가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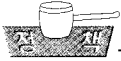
유동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함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 등)

① [별표 4]의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동표의 가전제품의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발포성 합성수지재질외의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의 이



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포장재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포장재질기준에 관한 적용례)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재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199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기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의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5. 2. 6환경부령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로 된 완충재의 전년도 감량화 실적 및 당해 연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1995년도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완충재의 감량화지침이 고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1995년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1999. 2. 19환경부령 제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5조의4·제6조·[별표 1](비고란을 제외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제4조제2항관련)

제품의 종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식품류	가공식품	15%이하	2차이내
	음료	10%이하	1차이내
	주류	10%이하	2차이내
	제과류	20%이하	2차이내
	건강·기호식품	15%이하	2차이내
화장품류	화장품(세제류포함)	10%이하	2차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이하	2차이내
	문구류	30%이하	2차이내
	신변접화류(지갑·허리띠)	30%이하	2차이내
의약부외품	의약부외품	20%이하	2차이내
의류	와이셔츠·내의류	10%이하	1차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가공식품,음료,주류, 제과류,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 포함), 신변접화류	25%이하	2차이내

비고

1.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날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날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 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 부풀려진 부분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스러짐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1회 이상 포장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하되,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1회이상 포장된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과 1회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종이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각각의 포장공간비율에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5.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6.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A1005-1996)에 의한다.
7. 판매자는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제품 또는 포장된 제품을 포장·판매할 수 있다.

[별표 2]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제5조의 2제1항관련)

대상제품 및 포장재	목 표 율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 식품류중 계란의 포장에 사용되는 계란받침(난좌) 또는 팩	60% 이상	60% 이상	80% 이상	80% 이상
2. 식품류중 과일(사과와 배에 한한다)의 포장에 사용되는 과일받침(난좌)	5% 이상	15% 이상	15% 이상	60% 이상
3. 식품류중 컵라면제품포장에 사용되는 컵용기	-	10% 이상	10% 이상	60% 이상
4. 화장품류(세제류 포함)제품과 잡화류 중 완구·인형류의 제품 및 종합제품으로서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포함)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류	40% 이상	40% 이상	60% 이상	60% 이상
5. (별표 1)에 규정된 제품(문구류·신변잡화류·의약부외품 및 의류를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포장재(제1호 내지 제4호의 포장재를 제외한다)	-	-	-	60% 이상

비고

-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2001년까지 적용되는 목표율은 당해 연도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해당 포장재총량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의 양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양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 제4호의 경우 2001년까지 적용되는 목표율은 당해 연도에 판매된 제품의 종류별로 받침접시류를 사용하지 아니한 품목수 및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받침접시류를 사용한 품목수와 합성수지재질로 된 받침접시를 사용한 품목중 50퍼센트 이상을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품목수를 합한 품목수가 판매된 총품목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제품의 종류는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를 포함한다). 완구·인형류로 하고, 품목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품명·용량 및 받침접시류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며, 내용물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한 블리스터 포장은 받침접시류로 보지 아니한다.
- 2002년 이후 적용되는 목표율은 당해 연도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포장재 총량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총량 중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별표 3]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의 재질의 표시방법(제5조4관련)

포장공간비율	% (기준: %)	
포장횟수 및 재질	1차 :	2차 :

비고

- 포장재질은 포장처수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이 경우 법제 11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이 달리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질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 등에 대하여 제5조의3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명·검사일자 및 검사번호 등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위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 및 포장횟수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연차별 감량화 대상 가전제품 및 감량화 목표율(제9조제1항관련)

- 대상가전제품 : 용적이 3만제곱센티미터이상인 텔레비전·냉장

고·세탁기·전자레인지·에어컨디셔너·퍼스널컴퓨터(모니터를 포함한다.)

- 목표율은 대상가전제품의 품목별 단위 규격당 완충재의 1994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사용량 감량률과 당해 연도의 대상가전제품에 사용된 완충재를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비율을 합

목표연도	1999년	2000년·2001년	2002년 이후
대기업	10% 이상	30% 이상	50%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산한 비율로 하며, 제조·수입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차별 목표율은 다음과 같다.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량 감량률은 대상 가전제품의 품목별 단위규격당 완충재의 1994년도 사용량에서 당해 연도의 사용량으로 나누어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처리한 비율은 당해 연도에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를 회수하여 재활용 처리 한 총량에 가전제품 전품목의 판매액 대비 대상 가전제품 품목의 판매액의 비율 곱하여 산정된 수치를 당해 연도의 대상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사용총량으로 나누어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